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8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5191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10.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재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 그 지상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8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하지만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1 내지 3호, 제107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전체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자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참조).[1]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근거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1) 이 판결의 판시를 참고하였다는 것이지 문언을 그대로 오려붙였다는 뜻은 아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8

별지

목 록

부과 연월일	부과 금액
2022. 7. 6.	132,160원
2021. 7. 7.	117,100원
2020. 7. 4.	111,490원
2019. 7. 5.	106,140원
2018. 7. 5.	101,070원
2017. 7. 6.	96,380원
2016. 7. 6.	91,840원
2015. 7. 7.	87,550원
2014. 7. 10.	101,210원